

국립대학 발전계획 수립을 추구하면서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1946년에서 1977년까지 6개 국립 종합대가 각 지역을 대표해 왔다. 그러나 1978~1982년 사이에 1도 1국립대 설립 원칙에 따라 추가로 4개의 국립 단과대학이 종합대로 승격되면서 10개의 국립종합대 체제로 바뀌었다. 그후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명칭상 구분이 없어지면서 특수목적대를 합하여 국립대는 33개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대학의 설립 목적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국·공·사립대의 설립 목적이 동일하며 매우 추상적이다. 따라서 국립대의 경우도 구태여 국립으로 설립한 목적이 불분명하다.

한편, 우리나라 국립대학 발전계획의 효시는 1960년초 USOM에 의한 지방 국립대학 종합화 안이었지만 무산되었다. 1961년 정부는 소위 국립대학 정비령을 발동하여 동일 지역 내의 단과대학은 종합대에 흡수하고, 유사학과는 통폐합했다. 그러나 이 대학 정비령도 세계적인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 국가적인 산업인력 양성의 필요성, 그리고 무리한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오래가지 못하고 1964년 거의 원상 복구되고 말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양질의 중화학공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립대 공과대학의 특성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정부가 시도한 최후의 국립대학 육성정책이었고, 그후부터는 모든 계획이 국·공·사립대학 육성계획에 통합되고 말았다.

19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에서는 각 대학을 교육중심, 교육과 연구중심, 대학원중심으로 기능적 분화와 특성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가 확실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각 국립대의 설립 목적과 기능 그리고 책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도 1국립대 정책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후발 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기타 특수목적 대학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국립대를 적어도 박사학위수여 연구중심대학과 석사학위수여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하고 이들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부산대 총장 윤 수 인

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정부는 고등교육을 국립대학 근간체제로 할 것인가, 근간이 없는 완전 개방체제로 할 것인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다면, 고등교육은 결국 국립대학 근간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국립대학의 장기 발전계획을 과감하게 수립하여 21세기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국립대는 국민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지역발전과 연계된 운영 형태와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대만의 각 국립대학은 명확한 설립 목적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6개의 주요 국립대학 중에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대학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소위 제국대학을 근간으로 하고 1현(부) 1국립대학을 원칙으로 98개 국립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일본은 21세기에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7개 국립대학(구 제국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대학 육성계획의 대표적 예로서 1959년 캘리포니아 주가 수립한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을 들 수 있는데, 박사수여대학인 9개 캘리포니아 대학과 석사수여대학인 23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고등교육의 근간을 이루면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교육과 연구 능력을 향상하여 국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목표로 100개의 대학과 일련의 학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21工程'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실천에 들어갔다.

우리도 시급히 국립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대학이 21세기 고등교육의 근간과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 한편,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해서 각 대학이 가진 자원과 능력 그리고 건학이념에 따라 적정 규모와 운영 형태를 취하도록 하여 나름대로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발전하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